사기·배상명령신청·배상명령신청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4. 4. 2012고단3614,2012고단3748(병합),2012고단4066(병합),2012고단4129(병합 4570(병합),2013고단92(병합),2012초기1890,2013초기73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봉경(기소), 이은윤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세영(국선)

【배상신청인】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.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, 판시 제1의 나. 및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(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)에게 편취금 10,556,000원을 지급하라.

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배상신청인 1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